

답변서

사 건 2012다15435 신분보장받을 권리확인 청구의 소
 원 고 임그루
 피 고 케이티노동조합

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.

상고취지에 대한 답변

1.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.
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

상고이유에 대한 답변

1. 1심 법원 및 원심은, 원고가 지금까지 주장한 사실관계 및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충분히 감안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.
2.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들 또한 전혀 이유 없는 억지 주장들이며,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

3.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,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2. 3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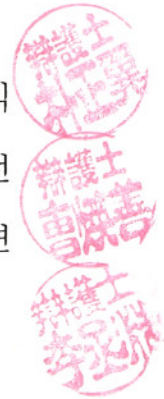
피고 소송대리인

법무법인 탑

담당변호사 박정익

담당변호사 조영선

담당변호사 이승연



대법원 민사3부

